

2022학년도 2학기 미래캠퍼스 학부생 일반휴학 안내

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입대휴학과 구분됨
[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·창업준비휴학 포함]

■ 신청기간

정해진 기간 내에만 휴학신청이 가능함. 신청 후 취소는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, 1회만 가능하며
9월 5일(수강변경 시작일)부터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기 바람

휴학신청 및 승인시점	휴학 신청 자격	수업료 반환
2022. 8. 1.(월) 10:00 ~ 9. 14.(수) 17:00	2학기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	수업료 전액
2022. 9. 15.(목) 9:00 ~ 11. 14.(월) 17:00	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신청 가능	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(질병·출산·천재지변·법적조치 사유에 의한 휴학에 따른 수업료 반환은 11. 29.(화) 17:00 까지 반환 가능)
2022. 11. 15.(화) 9:00 ~ 12. 1.(목) 17:00	질병·출산·천재지변·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	

■ 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

가.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관리 ⇨ 학적 ⇨ [휴복학] ⇨ [일반휴학]에서 신청하고
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

나. 단, 전역 후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연세포탈서비스
에 등재(성명, 생년월일, 입대일, 전역일)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: 군경력증명서, 병적증명서, 주민등
록초본, 전역증 앞면과 뒷면, 복무확인서, 전역증명서 등, 2MB이하)해야 하며 담당자 검토 후 승인

다. 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 및 창업준비를 위한 휴학 신청은 담당 부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
담당자 검토 후 최종 승인되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기 바람

1) 질병휴학

-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(보건복지부 지정)상급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의
휴학용 진단서를 건강관리센터(☎ 033-760-2644, 학생회관 212호)에 방문 제출 및 상담 필요

2)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- 일반휴학원서(임신·출산·육아),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주교무부(학적)
(☎ 033-760-2158, 대학본부 108호)에 제출하여 신청

3) 창업휴학

- 창업휴학 신청서, 휴학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, 창업실
적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를 개강일 이후 2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창의교육
지원센터(☎ 033-760-5285, 학생회관 245호)에 제출하여 1차 승인받아야 함

4) 창업준비휴학

- 창업준비휴학 신청서, 창업계획서, 기타 증빙 서류를 개강일 이후 2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
원칙으로 하며, 창의교육지원센터(☎ 033-760-5285, 학생회관 245호)에 제출하여 1차
승인받아야 함

5) 휴학원서 등 각종 신청서는 [학교 홈페이지 미래캠퍼스 ⇨ 학사지원 ⇨ 각종신청서양식모음]에서
내려 받을 수 있음

■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

휴학승인시점	수업료 반환율	비고
2022. 9. 14.(수) 17:00 까지	전액	
2022. 9. 30.(금) 17:00 까지	수업료의 5/6	
2022. 10. 31.(월) 17:00 까지	수업료의 2/3	
2022. 11. 14.(월) 17:00 까지 <일반휴학 마감 일자>	수업료의 1/2	학기 2/3선
2022. 11. 29.(화) 17:00 까지	수업료의 1/2	질병·출산·천재지변·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반환
2022. 12. 1.(목) 17:00 까지	반환 없음	

가.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

나. **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: 휴학 승인일로 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**

다. 반환 계좌: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

(계좌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,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)

- 1) 외국국적자의 계좌 입력 및 변경은 재무부를 통해서 가능(☎ 033-760-2149, 대학본부 206호)
- 2)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
- 3)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복지처에 방문(☎ 033-760-2126, 학생회관 235호)하여 장학금 취소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

■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

: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

■ 일반휴학 기간

- 가.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(당초입학)
단,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/2 이내로 함
- 나.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 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
- 다. 임신,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
- 라. 창업(준비)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
- 마. 국가고시(외무고시, 행정고시, 군법무관 임용시험)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향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으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 연장을 허가 할 수 있음
- 바. 휴학학기 수 조회 :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관리 ⇨ 학적 ⇨ [자료조회]

■ 일반휴학 기간 연장

가. 휴학 잔여학기가 있을 경우: 별도 신청 없이 연장

나. 휴학 잔여학기가 없을 경우: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(미등록시 제적함)

■ 일반휴학 취소

가. 일반휴학 취소 가능 시한

- 1)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, 1회에 한해 취소 가능
- 2) 단, 2022. 9. 2.(금) 17:00 (업무일 기준 수강변경 전일)까지만 취소 가능하며 이후로는 불가

나. 취소 신청 방법

1)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

- 취소 가능 기간: 2022. 8. 1.(월) 10:01 ~ 2022. 8. 19.(금) 17:00(수강신청 마지막 날)
-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관리 ⇨ 학적 ⇨ [휴복학] ⇨ [일반휴학]

2) 일반휴학 취소원 제출

- 취소 가능 기간: 2022. 8. 22.(월) 9:00 ~ 2022. 9. 2.(금) 17:00까지 교무부(학적) 접수
- [학교 홈페이지 미래캠퍼스 ⇨ 학사지원 ⇨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]에서 '일반휴학 취소원'을 내려 받아 재무부 담당자 확인을 거쳐 교무부(학적)로 제출

다. 재학생이 일반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상태는 '재학'으로 환원됨. 단, 휴학 신청 시 기존의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 삭제되므로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과목의 수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

■ 유의사항

가.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(캠퍼스내/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)의 첫 학기에는 질병, 임신, 출산,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

나.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(VSP) 기간 동안에는 휴학 불가

다. 2023년 2월 졸업신청자는 교무부(학적)에서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 신청 가능

라.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 (문의: ☎ 033-760-2510, 원주학술정보원 3층)

마.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

바.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
사.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: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

아. 복학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 완납 전까지 교무부(학적)에서 복학예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

자.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: ☑학칙 제 8장, ☑학사에대한내규 제 6장, 제 8장 등

대학홈페이지 ⇨ 연세소개 ⇨ 대학현황 ⇨ 규정집 ⇨ 본문 '휴학' 검색하여 확인 가능

차. 지정된 기간 내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음

- 신·편입생 첫 학기자, 휴학연한 만료자 등 일반휴학 불가자는 "미수강제적" 함
- 신·편입생 첫 학기자 외 일반휴학 연한이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 처리함

카. 휴학 관련 주요 문의처(033-760-해당부서)

☎ 등록금 납부 및 수업료 반환 : 재무부(2149)

☎ 장학금: 학생복지처(2126)

☎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: 학생건강공제회(5430)

☎ 예비군 관련: 예비군연대(2595), 전역 후 복학 승인된 학생의 예비군 전입은 자동 처리
단,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바람.

☎ 수업·성적: 원주교무부(수업)(2165)

☎ 졸업신청 및 연기, 전공 등 : 원주교무부(학적)(2156)

☎ 휴·복학 신청관련: 원주교무부(학적)(2158)

☎ 질병휴학관련: 건강관리센터(2644)

☎ 창업(준비) 휴학을 위한 서류준비 및 승인절차: 창의교육지원센터(5285)

- 기타 학사행정 FAQ 웹사이트 경로 학교 홈페이지 ⇨ 학사지원 ⇨ 학사행정 ⇨ 휴학/복학